

환경부 공고 제2013-562호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2013년 10월 30일 / 환경부장관

1. 제안이유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공포('13. 7. 30) 됨에 따라 배출시설 등의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,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면제조건,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 상·하류 일정지역의 범위, 폐수처리업자의 재위탁처리 허용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, 기업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폐수처리업 등록요건만 갖추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한국환경공단이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방제조치 대집행 지원시 비용 청구의 범위를 구체화(안 제26조의2 신설)
방제인력비, 열실·소비된 물품가격, 사용된 기구 수리·임차비, 방제 조치를 위한 물건의 제거·운반 또는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별표로 규정함.
- 나. 환경부장관이 수행하는 배출시설 등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의 항목·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(안 제26조의3 신설)
10년 단위로 배출시설 등(폐수 다량배출시설,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내 비점오염저감시설, 700m³/일 이상의 폐수종말처리시설)에 대해 기후노출 정도, 기후변화 민감도, 기후변화 적응능력 등을 조사하도록 함.
- 다.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를 권고받은 수면관리자가 이의 이행을 위해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관계전문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, 한국환경공단,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지정(안 제27조의2 신설)
- 라. 하나의 부지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면제요건을 구체화(안 제75조 개정)
면제반고자 하는 자는 강우유출수를 유입처리하려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고자와 시설 운영에 관한 규약을 마련하여 제출하도록 함.
- 마.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도로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취수시설 상·하류 일정지역의 범위 구체화(안 제78조의2 신설)
취수시설의 상류로 유히거리 15km 이내인 지역 및 하류로 유히거리 1km 이내인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함.
- 바. 환경부장관이 비점오염원의 관리 및 저감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국립환경과학원, 한국환경공단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지정(안 제84조의2 신설)
- 사. 폐수처리업 등록의 편의성 제고(안 제90조 개정)
등록서류를 온라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처리업의 법적 등록요건만 갖추면 관할 행정기관이 등록증을 발급하게 함.
- 아. 폐수처리업자의 재위탁처리 금지 중 예외사항 규정(안 제91조제1항 신설)
최소 10일 이상 폐수의 정상처리가 불가능하여 폐수가 방치될 경우 재위탁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되,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.

환경부 공고 제2013-566호
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2013년 10월 31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「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1881호, 2013. 6. 12 공포, 2014. 3. 23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도입 등(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)

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도입하고, 그 교육시간을 정함.

나.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완화(안 제11조제3항)

중전의 규제 중심에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참여하도록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의무를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.

다.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방법(안 제14조 신설)

환경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, 신문·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.

라.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(안 별표 5)

새집증후군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방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.